

## 2026년도 포항시청소년재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

「포항시청소년재단 인사 규정 제34조(명예퇴직)」에 의거  
2026년도 포항시청소년재단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2. 13 .

포항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1. 계획인원: 00명

### 2. 명예퇴직 신청대상

가. 포항시청소년재단 4급이하 일반직 및 업무직 직원 중 20년 이상  
근속(당해 재단 5년 이상 근무)하고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 
기간이 남은 직원

※ 근무경력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전 포항시 공무원 근무  
경력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정규직 근무경력 포함

### 3. 명예퇴직 대상의 제한(신청기간 개시일 현재부터 명예퇴직일까지)

가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

- 1)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 
기간 중에 있는 직원
- 2)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직원
- 3)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 
중인 직원
- 4)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까지 재단 직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한 기간이  
5년미만인 직원(시설관리공단 근무경력도 재단 근무경력 포함)

- 5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(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 및 특수경력직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직원
- 6)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직원
- 나.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

#### 4. 명예퇴직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

가. 신청기간: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

※ 신청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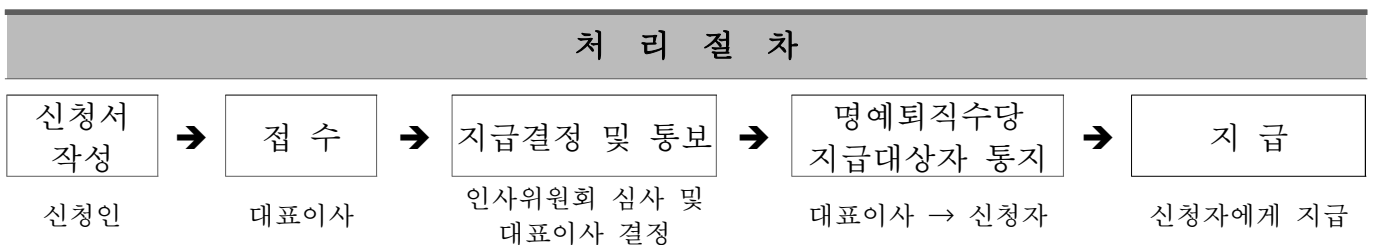
※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추가 신청 절대 불가

나. 명예퇴직 예정일: 결정월 마지막 날

다. 근속년수 및 정년잔여기간의 계산

- 근속년수는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
- 정년잔여기간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

라. 신청절차: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팀의 확인을 받은 후 대표이사에게 제출



#### 마. 제출서류

- 1)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
- 2) 명예퇴직원 1부
- 3) 명예퇴직자보안서약서 1부
- 4) 명예퇴직자확약서 1부

※ 명예퇴직 희망자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함

### 5.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 결정 및 통지

#### 가. 선정기준

- 1) 기본요건: 신청 기간 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직원
- 2) 명예퇴직 대상자 결정의 우선 순위
  - ① 상위직 직원
  - ② 장기근속 직원

#### 나.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

- 1) 심사결정: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
- 2) 통 지: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당지급 대상자, 지급일, 지급장소,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

※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,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.

다만, 사망 당시에 근속기간과 정년잔여기간이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.

## 6. 명예퇴직수당 지급시기

- 명예퇴직 대상자 통지 후 소정의 양식을 첨부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

## 7. 명예퇴직수당 지급방법

-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

## 8.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및 환수

-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**명예퇴직일**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대상의 제외요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**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**하며,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자에 대하여는 공단 명예(조기)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**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**함.

## 9.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방법

### 〈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〉

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
1. 1년이상 5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(기본연봉월액)의 반액×정년잔여월수
2. 5년초과 10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(기본연봉월액)의 반액× $(60 + \frac{\text{정년잔여월수} - 60}{2})$
3. 10년 초과인 자	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아니함

비고: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,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## 10. 기타사항

- 가. 기타 사항은 「포항시시설관리공단 명예(조기)퇴직수당 지급규정」 참고
- 나. 소속 팀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「**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**」와 「**명예퇴직원**」을 작성·제출하였는지 여부 확인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팀(인사담당자 054-240-911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
1.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.
  2. 명예퇴직원 1부.
  3.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.
  4. 명예퇴직 협약서 1부.
  5.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심사서 1부. 끝.

<붙임 1>

## 명예(조기)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(1)소 속		(2)직원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직 <input type="checkbox"/> 업무직	(3)직위(급)	
(4)성 명	(한글)	(5)주민등록 번호		(6)주 소	
	(한자)				
(7)근속연수		(8)정 년 일	년 월 일	(9)정년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령정년 <input type="checkbox"/> 계급정년
(10)정 년 잔여기간		(11)퇴 직구분		(12)수당지급 대상기간	년 월
(13)수 당 청 구 액		(14)산출내역			

명예(조기)퇴직수당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(조기)퇴직수당 지급을  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붙임 인사기록카드 사본(원본대조확인) 1부. 끝.

년 월 .일

신 청 인

(인)

포항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귀하

<붙임 2>

## 명 예 퇴 직 원

- 소 속:
- 직위/직급:
- 성 명:
- 명예퇴직 사유: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2026. . . . 자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포항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귀하



<붙임 4>

## 명예퇴직자확약서

소 속:  
직 급:  
성 명:

위 본인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「포항시청소년재단 명예(조기)퇴직수당 지급규정」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며,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이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및 경영지원팀에 신고하겠습니다.

1.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지 아니함.
2.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함.
3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함.
4.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지 아니함.
5. 정무직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은 제외)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.
6.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.

202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명예퇴직 신청자

서명 (인)

포항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귀하

<붙임 5>

##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심사서

대 상 자 인적사항	소 속 :	
	직 급 :	
	성 명 :	
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	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	
	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	
	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	
	명예퇴직 예정일 현재까지 재단 직원으로 계속하여 재직 한 기간이 5년미만인자(시설관리공단 근무경력은 재단 근무경력 포함)	
	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	
	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	
	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	
<b>조사작성 및 확인자</b> 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margin: 10px 0;"> <span>2026년</span> <span>월</span> <span>일</span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margin: 10px 0;"> <span>조 사 자 :</span> <span>(인)</span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margin: 10px 0;"> <span>확 인 자 :</span> <span>(인)</span> </div>		